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08년 1월 10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8년 1월 10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4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. 22) 상정
- 제141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8. 1. 22) 원안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예산법무과장 김 창 열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7663호, 2005. 8. 4. 공포·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64조 → 제77조, 제29조제3항 → 제34조제3항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 정비. (안 제2조 및 제10조제3항)
-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도록 함.
(안 제8조제5항 신설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의 내용	답변 내용
<p>○ 조례 개정 사유는?</p>	<p>○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어 이에 맞는 관련규정의 개정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위함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음

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음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04호
의결 년월일	2008. 1. 23 (제141회)

제출년월일 : 2008. 1. 10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□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이 전부개정(법률 제7663호, 2005. 8. 4. 공포·2006. 1. 1. 시행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는 한편,
-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,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가.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으로 조 번호가 변경(제64조 → 제77조, 제29조제3항 → 제34조제3항)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함.
(안 제2조 및 제10조제3항)
- 나.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8조제5항 신설)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관리에 관하여”를 “관리에”로 한다.

제2조 본문 중 “용어의 정의는”을 “용어의 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

제1호 중 ““통합기금”이라 함은”을 ““통합기금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

조 제2호 중 ““보유자금”이라 함은”을 ““보유자금”이란”으로 하고, 같

은 조 제3호 중 ““시금고”라 함은”을 ““시금고”란”으로 하며, “제64조

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7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총

괄기금관리관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총괄기금관리관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

제5호 중 ““기금운용관”이라 함은”을 ““기금운용관”이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호 중 “타 기관, 단체로부터”를 “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의”

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 한다.

제5조제3호 중 “타기금”을 “다른 기금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

“기 발행”을 “이미 발행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

에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5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 중 “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

“13인”을 “13명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제2호 중 “2인”을 각각 “2명”

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출납폐쇄후”를 “출납폐쇄 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외”를 “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 외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p>1.~2. (생략) 3. 타 기관, 단체로부터 출연·예탁금 4. (생략) 5. 기타 수익금 제5조(통합기금의 용도) (생략)</p>	<p>1.~2. (현행과 같음) 3.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의----- ----- 4. (현행과 같음) 5. 그 밖의----- 제5조(통합기금의 용도) (현행과 같음)</p>
<p>1.~2. (생략) 3. 특별회계 및 타기금에 대한 자금의 용자 4. 기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위한 자금의 용자 5.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특수사업에 대한 자금의 용자</p>	<p>1.~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다른 기금----- ----- 4. 이미 발행----- ----- 5. 그 밖에----- -----</p>
<p>제6조(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) ① (생략) ②식품진흥기금 중 「식품위생법」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.</p>	<p>제6조(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제65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7조(예탁금의 이자율)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국·공채의 이자율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</p>	<p>제7조(예탁금의 이자율) 제6조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다만,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</p> 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) ①·② (생략)</p> <p>1.~5. (생략)</p> <p>6. <u>기타</u>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토의에 부치는 사항</p> <p>③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<u>13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<u>2인</u>과 금융관련 전문가 <u>2인</u></p> <p>3. <u>기타</u> 위원장이 필요하여 위촉하는 자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<u>기타</u>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9조(통합기금의 결산) ①시장은 <u>출납폐쇄후 80일</u> 이내 통합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8조(위원회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1.~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③ ----- ----<u>13명</u>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<u>2명</u>-----<u>2명</u></p> <p>3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</p> <p>⑤ <u>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u></p> <p>⑥ ----- --<u>그 밖에</u>----- -----.</p> <p>제9조(통합기금의 결산) ① ----- <u>출납폐쇄 후</u>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 <p>제10조(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· ② (생략)</p> <p>③ 통합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·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	<p>② 제1항에 따라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10조(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·세출예산외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